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윤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9월 7일

발 의 자 : 서윤기·박호근·김용석(도봉)
우형찬·유 용·김제리
진두생·박기열·김창수
이순자·유광상·김인호 의원
(12명)

1. 제안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,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,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(안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“위촉직 위원 정수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”를 “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%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의 주민참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,...(중략)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